

국내용역에 대한 해외업체 및 해외업체의 국내법인과 계약시 부가세처리여부

Q 국내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대해 해외업체와 그 해외업체의 국내법인에게 하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이지만 해외업체와 하도계약시에는 용역(물품)의 수입으로 보고 인보이스를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외업체의 국내법인의 경우 국내거주자인 법인과 직접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금지급을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국내법인에게 대금지급시에는 원화가 아닌 달러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공급받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인보이스 통한 대금지급을 하면 되며, 대금 지급시 어떤 통화로 지급할 것인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일학습병행제 관련하여 근로소득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저희 회사는 대학생을 채용하여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고용한 대학생에게 업무 관련 교육을 훈련하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전담인력활동 수당(훈련비)을 회사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로 입금 받은 수당을 해당 학생이 근무하는 부서장에게 입금하고 부서장은 해당 학생을 훈련하고 교육한 직원에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적으로 수당을 입금 받은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될까요?

A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재화의 납품은 국내 업체로 하나 대금은 해외법인에서 수금하는 거래의 경우

Q 해외법인 B가 당사로 직접 발주를하고, 대금 또한 해외법인 B로부터 수금하는 거래이나, B 법인으로 직수출 하지 않고, 당사의 재화를 국내업체 A에 납품하여 A업체가 B법인으로 수출 하였습니다.

(재화의 흐름 : 당사 > A업체 > B법인)

이 과정에서 A업체와 당사와의 수수료 등 금전 거래는 없으며, 납품에 대한 증빙만 구비한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러한 거래의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해외법인 B와의 결제대금이 US달러로 거래되기때문에, 어느 시점의 환율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부가세 신고 시 해외법인 B와의 발주서와 외화입금 증명서 제출로 문제 없을까요?

질문3. 해당 거래는 전년도 발생한 매출 누락 건으로 당월 회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1. 귀사가 직수출하지 않고 A업체에게 공급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외법인 B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 수출물품을 국내의 A에게 공급하라고 지정한 경우라면 A에게 공급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 해외업체 A가 B에게 공급하라고 지정한 경우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영세율입증사본으로 인정됩니다.
3. 회계는 거래시점의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작년 거래를 올해에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방법이 아니므로 당연히 이런 거래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보험료 환급

Q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용차량 보험료를 당해년도에 차량매각 후 해지하면서 발생한 보험료 환급분에 대해 비용 차감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전년도 비용이므로 당해년도 잡이익 처리할지 문의드립니다.

A 차량 매각하면서 발생된 보험료 환급분에 대해서는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